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2020. 11. 3. 2020나311167]



【전문】

【원고, 항소인】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은)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8가단133165 판결

【변론종결】2020. 10. 15.

【주문】

]

1. 제1심판결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52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20.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3.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 중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52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1, 피고 2는 피고 대한민국의 경찰공무원으로 대구○○경찰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는 2015. 9. 14. 체포되어 수사를 받다가 2015. 10. 12. 석방된 사람이다.

- 나. 원고에 대한 체포·구속 경위
- 1) 소외 1은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5. 7. 31. 피고 2에게 원고의 송유관 기름 절도에 관한 범죄를 제보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 소외 2는 2012년 10월에 후배와 함께 경산 포도밭에 1미터 정도 땅을 파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놓고 호스 100미터를 묻어 두었다가 11월부터 기름을 빼내려고 했는데 그날 작업이 끝난 뒤 후배와 나오다가 담배를 피우려고 나이터를 켜는 순간 몸에 불이 붙어 병원에(△△로터리 부근 화상전문 병원이라 했음) 1년 정도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 그 후 퇴원해 현장에 가보니 송유관 직원들이 나와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그래서 후배와 함께 누가 부탁하면 사천에서 칠천만 원 정도 받고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준다고 했습니다. 몇 군데 뚫어 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 추풍령, 영동, 경산 쪽 3군데 정도 작업했다고 했음. 이 이야기는 저와 원고하고 송유관 기름 일하면서 원고 후배한테 들었음.지인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다.
- 원고가 송유관 절도기름을 함께 하자고 제의를 하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1차례 같이 하던 도중 팔이 부러져 서 그만두게 되었다.
- 원고와 소외 7과 전화통화 하는 내용(송유관 관련)을 여럿 들었고 지금도 소외 7 친구라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원고는 해외에서 스포츠토토 로또, 카지노 법무법인을 등록하고 온 것을 직접 확인함. 원고는 대구 수성구 매호동에서 1~2층 건물에서 본사를 꾸려나가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로 알고 있다.

직원들 중에 게임을 개발한 원고 후배도 있음(원고가 말함)

- 2) 피고 2는 2015. 8. 7. 대구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소외 1을 조사하였다.
- 소외 1은 '원고, 소외 2, 소외 2의 후배가 2012. 10.경 경산의 포도밭 아래에 있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절취하려고 시도하다가 소외 2가 담뱃불에 화상을 입는 바람에 실패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본인이 2012. 8.경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원고의 제안에 따라 송유관 기름 절도 범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절취한 기름을 운반하던 원고의 공범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3) 그 후 피고 2와 그 상사인 피고 1은 2015. 8. 10.경 수사를 통해 소외 2가 2011. 2. 6. △△네거리에 있던 화상전문병원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대한송유관공사 직원이 2011. 3. 4.경 순찰 도중 경주시 ◇◇리 포도밭에서 도유 흔적을 발견하고 송유관을 복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4) 피고 2는 대구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2015. 8. 11., 2015. 8. 27. 및 2015. 9. 8. 소외 1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 당시 작성된 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시 생각해 보니 원고, 소외 2, 소외 2의 후배가 송유관 기름 절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은 2012. 10.경이 아니라 2011. 2. 초순경의 일이고, 그 장소도 경산이 아니라 경주 건천이다.
- 원고는 위 범행에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원고는 자금과 절취한 기름을 처분하는 역할을 하고, 소외 2가 송유관을 뚫는 기술자이며, 소외 2의 후배는 송유관을 뚫는 것을 도와주면서 기름을 절취하면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 2012. 8.경 대구교도소 출소 후 원고의 부탁으로 절취한 송유관 기름을 소외 2의 후배로부터 인계받아 원고가 어떤 여자 명의로 운영하던 ☆☆주유소로 운반해 주었는데, 그 시기는 2013. 4. 또는 5.경이고 운반해준 횟수는 3~4회 정도이다.
- 훔친 기름을 저장할 장소를 만들라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 ▽▽PVC 공장, ◎◎ 삼거리 인근 공장에서 2,000리터 탱크로리 300개를 공급받아 성주군 (주소 1 생략)에 위치한 원고 어머니 명의의 토지 지상에 이를 설치하였고, 그 위에 검정 차양막을 덮어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 5) 피고 2, 피고 1은 2015. 8. 27. 경북 성주군 (주소 1 생략) 인근에서 소외 1이 탱크로리 300개를 설치하였다고 말한 장소(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4가 소유한 경북 성주군 (주소 2 생략) 토지)를 발견하였고, 2015. 8. 31. ▽▽PVC 공장, ◎◎ 삼거리에 위치한 ◁◁자재로부터 2014. 8. 또는 9.경 2,000리터 물탱크 약 150개를 위 (주소 2 생략)으로 배달 해준 사실이 있다는 확인을 받았다.
- 또한 피고 2, 피고 1은 2015. 9. 3. 대구 서구 (주소 3 생략)에 위치한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가 2013. 7. 15. 소외 5로 변경되었다가 2013. 10. 31. 다시 소외 6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6) 피고 2, 피고 1은 2015. 9. 10. 대구지방검찰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수절도미수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라한다)로 원고와 소외 2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소외 9는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 원고와 소외 2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 판사 소외 10은 2015. 9. 12. 원고와 소외 2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 피의자 원고, 피의자 소외 2, 불상의 피의자는 송유관을 뚫어 기름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원고는 자금책 및 송유관에 서 절취한 기름을 처분하는 역할을, 소외 2와 불상의 피의자는 송유관을 뚫고, 절취한 기름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 피의자들은 2011. 2. 6. 불상경 경주시 건천읍 ◇◇리 포도밭(온산기점 약 69km) 아래에 송유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고, 불상의 방법으로 심도 50㎝ 정도의 땅을 판 후, 송유관을 뚫어 2m 가량의 도유호스를 연결하여 송유관에 있는 기름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소외 2의 몸에 기름 및 유증이 묻어 있는 것을 모르고 담배를 피면서 불이 붙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7) 원고는 위 체포영장에 따라 2015. 9. 14. 체포되었고, 이후 2015. 9. 16.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다.

이후 사건 경과

- 1) 피고 1은 2015. 9. 21. 원고에 대한 위 특수절도미수 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 2) 원고는 2015. 10. 12. 석방되었다.
- 3) 대구지방검찰청은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소외 2, '소외 2의 후배'인 소외 3을 알지도 못하고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가 소외 1을 사기로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소외 1이 허위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 소외 2, 소외 3은 이 사건 범죄의 공범이 자신들 2명뿐이고, 원고를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 또한 원고와 소외 2, 소외 3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3명간의 거래내역이 전혀 없고, 원고가 소외 2의 화상치료 비를 결제한 내역도 없으며, 소외 2가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소외 3을 45회 접견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언 급한 사실이 없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외 1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소외 3과의 대질조사를 거부한 점, 소외 1은 2012. 8.경 소외 3과 여러 번 만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제보 당시 소외 3의 이름조차 모른다고 진술한 점,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1이 소외 2, 소외 3의 송유관 절도미수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원고가 자금 조달 역할을 한 것처럼 가공하여 허위제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또한 소외 1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외 1의 진술은 소외 3으로부터 범행내용을 들었다는 전문진술인데, 원진술자인 소외 3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소외 1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자료가 없다.
 - 라. 원고에 대한 피의자보상
- 원고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여 2017. 12. 13. 대구지방검찰청 피의자보상심의회로부터 '국가는 원고에게 6,472,800원을 지급한다'라는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피의자보상금 6.472,800원을 수령하였다.
- 마.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고소 결과
- 원고는 피고 2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2는 2020. 7. 2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2020. 7. 30.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1, 피고 2는 피고 대한민국의 경찰공무원으로 대구○○경찰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는 2015. 9. 14. 체포되어 수사를 받다가 2015. 10. 12. 석방된 사람이다.

- 나. 원고에 대한 체포·구속 경위
- 1) 소외 1은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5. 7. 31. 피고 2에게 원고의 송유관 기름 절도에 관한 범죄를 제보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 소외 2는 2012년 10월에 후배와 함께 경산 포도밭에 1미터 정도 땅을 파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놓고 호스 100미터를 묻어 두었다가 11월부터 기름을 빼내려고 했는데 그날 작업이 끝난 뒤 후배와 나오다가 담배를 피우려고 나이터를 켜는 순간 몸에 불이 붙어 병원에(△△로터리 부근 화상전문 병원이라 했음) 1년 정도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 그 후 퇴원해 현장에 가보니 송유관 직원들이 나와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후배와 함께 누가 부탁하면 사천에서 칠천만 원 정도 받고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준다고 했습니다.

몇 군데 뚫어 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추풍령, 영동, 경산 쪽 3군데 정도 작업했다고 했음. 이 이야기는 저와 원고하고 송유관 기름 일하면서 원고 후배한테들었음.지인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다.
- 원고가 송유관 절도기름을 함께 하자고 제의를 하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1차례 같이 하던 도중 팔이 부러져 서 그만두게 되었다.
- 원고와 소외 7과 전화통화 하는 내용(송유관 관련)을 여럿 들었고 지금도 소외 7 친구라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원고는 해외에서 스포츠토토 로또, 카지노 법무법인을 등록하고 온 것을 직접 확인함. 원고는 대구 수성구 매호동에서 1~2층 건물에서 본사를 꾸려나가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로 알고 있다.

직원들 중에 게임을 개발한 원고 후배도 있음(원고가 말함)

- 2) 피고 2는 2015. 8. 7. 대구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소외 1을 조사하였다.
- 소외 1은 '원고, 소외 2, 소외 2의 후배가 2012. 10.경 경산의 포도밭 아래에 있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절취하려고 시도하다가 소외 2가 담뱃불에 화상을 입는 바람에 실패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본인이 2012. 8.경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원고의 제안에 따라 송유관 기름 절도 범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절취한 기름을 운반하던 원고의 공범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3) 그 후 피고 2와 그 상사인 피고 1은 2015. 8. 10.경 수사를 통해 소외 2가 2011. 2. 6. △△네거리에 있던 화상전문병원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대한송유관공사 직원이 2011. 3. 4.경 순찰 도중 경주시 ◇◇리 포도밭에서 도유 흔적을 발견하고 송유관을 복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4) 피고 2는 대구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2015. 8. 11., 2015. 8. 27. 및 2015. 9. 8. 소외 1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 당시 작성된 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시 생각해 보니 원고, 소외 2, 소외 2의 후배가 송유관 기름 절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은 2012. 10.경이 아니라 2011. 2. 초순경의 일이고, 그 장소도 경산이 아니라 경주 건천이다.
- 원고는 위 범행에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원고는 자금과 절취한 기름을 처분하는 역할을 하고, 소외 2가 송유관을 뚫는 기술자이며, 소외 2의 후배는 송유관을 뚫는 것을 도와주면서 기름을 절취하면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 2012. 8.경 대구교도소 출소 후 원고의 부탁으로 절취한 송유관 기름을 소외 2의 후배로부터 인계받아 원고가 어떤 여자 명의로 운영하던 ☆☆주유소로 운반해 주었는데, 그 시기는 2013. 4. 또는 5.경이고 운반해준 횟수는 3~4회 정도이다.
- 훔친 기름을 저장할 장소를 만들라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 ▽▽PVC 공장, ◎◎ 삼거리인근 공장에서 2,000리터 탱크로리 300개를 공급받아 성주군 (주소 1 생략)에 위치한 원고 어머니 명의의 토지 지상에 이를 설치하였고, 그 위에 검정 차양막을 덮어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 5) 피고 2, 피고 1은 2015. 8. 27. 경북 성주군 (주소 1 생략) 인근에서 소외 1이 탱크로리 300개를 설치하였다고 말한 장소(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4가 소유한 경북 성주군 (주소 2 생략) 토지)를 발견하였고, 2015. 8. 31. ▽▽PVC 공장, ◎◎ 삼거리에 위치한 ◁◁자재로부터 2014. 8. 또는 9.경 2,000리터 물탱크 약 150개를 위 (주소 2 생략)으로 배달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준 사실이 있다는 확인을 받았다.

- 또한 피고 2, 피고 1은 2015. 9. 3. 대구 서구 (주소 3 생략)에 위치한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가 2013. 7. 15. 소외 5로 변경되었다가 2013. 10. 31. 다시 소외 6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6) 피고 2, 피고 1은 2015. 9. 10. 대구지방검찰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수절도미수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라한다)로 원고와 소외 2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소외 9는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 원고와 소외 2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 판사 소외 10은 2015. 9. 12. 원고와 소외 2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 피의자 원고, 피의자 소외 2, 불상의 피의자는 송유관을 뚫어 기름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원고는 자금책 및 송유관에서 절취한 기름을 처분하는 역할을, 소외 2와 불상의 피의자는 송유관을 뚫고, 절취한 기름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 피의자들은 2011. 2. 6. 불상경 경주시 건천읍 ◇◇리 포도밭(온산기점 약 69km) 아래에 송유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고, 불상의 방법으로 심도 50cm 정도의 땅을 판 후, 송유관을 뚫어 2m 가량의 도유호스를 연결하여 송유관에 있는 기름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소외 2의 몸에 기름 및 유증이 묻어 있는 것을 모르고 담배를 피면서 불이 붙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7) 원고는 위 체포영장에 따라 2015. 9. 14. 체포되었고, 이후 2015. 9. 16.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다.

이후 사건 경과

- 1) 피고 1은 2015. 9. 21. 원고에 대한 위 특수절도미수 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 2) 원고는 2015. 10. 12. 석방되었다.
- 3) 대구지방검찰청은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소외 2, '소외 2의 후배'인 소외 3을 알지도 못하고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가 소외 1을 사기로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소외 1이 허위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 소외 2, 소외 3은 이 사건 범죄의 공범이 자신들 2명뿐이고, 원고를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 또한 원고와 소외 2, 소외 3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3명간의 거래내역이 전혀 없고, 원고가 소외 2의 화상치료 비를 결제한 내역도 없으며, 소외 2가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소외 3을 45회 접견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언 급한 사실이 없다.
- 소외 1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소외 3과의 대질조사를 거부한 점, 소외 1은 2012. 8.경 소외 3과 여러 번 만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제보 당시 소외 3의 이름조차 모른다고 진술한 점,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1이 소외 2, 소외 3의 송유관 절도미수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원고가 자금 조달 역할을 한 것처럼 가공하여 허위제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 또한 소외 1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외 1의 진술은 소외 3으로부터 범행내용을 들었다는 전문진술인데, 원진술자인 소외 3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소외 1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자료가 없다.
 - 라. 원고에 대한 피의자보상
- 원고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여 2017. 12. 13. 대구지방검찰청 피의자보상심의회로부터 '국가는 원고에게 6,472,800원을 지급한다'라는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피의자보상금 6,472,800원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고소 결과

원고는 피고 2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2는 2020. 7. 2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2020. 7. 30.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